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2일, 이재관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재관의원)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서기영 전문위원)

개정안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이 있는 지역¹⁾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²⁾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에게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법은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 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³⁾을 점용

-
- 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자에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설비의 낙하, 붕괴 등으로 인하여 그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 인근 지역에 대한 위험성의 판단이 성인보다 미숙하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길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의 시설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을 점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고 위험 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가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지역을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명확히 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지역”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① ----- ----- ----- ----- ----- ----- ----- ----- -----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u>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① ----- ----- ----- ----- ----- ----- ----- ----- ----- ----- ----- --. ----- ----- ----- ----- ----- ----- ----- -----

<u><신 설></u>	<u>로와 안전시설을 설</u> <u>치하여야 한다.</u> 1. 「<u>도로교통법</u>」 <u>제12조제1항 각</u> <u>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시</u> <u>설이나 장소의</u> <u>주변 지역</u> <u><신 설></u>	----- -----. 1. ----- <u>제 12 조 제 1 항 에</u> <u>따라 지정된 어</u> <u>린이 보호구역</u> 2. 「<u>도로교통법</u>」 <u>제12조의2제1항</u> <u>에 따라 지정된</u> <u>노인 보호구역</u> <u>및 장애인 보호</u> <u>구역</u> 3. 「<u>교육환경 보호</u> <u>에 관한 법률</u>」 <u>제8조에 따른 교</u> <u>육환경보호구역</u> <u><삭 제></u>
<u><신 설></u>	2. 「<u>교육환경 보호</u> <u>에 관한 법률</u>」 <u>제8조에 따른 교</u> <u>육환경보호구역</u>	3. 「<u>교육환경 보호</u> <u>에 관한 법률</u>」 <u>제8조에 따른 교</u> <u>육환경보호구역</u>
<u><신 설></u>	3. 「<u>국토의 계획</u> <u>및 이용에 관한</u> <u>법률</u>」 <u>제36조제1</u> <u>항제1호가목 및</u> <u>나목에 따른 주거</u> <u>지역 또는 상업지</u> <u>역</u>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를 “보행안전통로”로, “설치하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 ----- ----- ----- ----- ----- ----- ----- ----- ----- ----- ----- ----- ----- ----- <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
<신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u><신 설></u>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u>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u> <u>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u> <u>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u> <u>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③ (생 략)	3.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u> <u>률</u>」 제8조에 따른 <u>교육환경</u> <u>보호구역</u> ② ----- <u>보행안전통로-----설</u> <u>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u> <u>하지-----</u> -----. ③ (현행과 같음)
--	--